

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

유아숲지도사 국가자격증(산림청)

# 제10기 교육생 모집 안내

## 숲과 더불어 자란다!

유아숲지도사는 유아숲체험원에서 숲체험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신체적, 정서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, 교육하는 산림교육전문가로서 숲 생태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유아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 (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)

### 교육개요

- ◆ 교육기간 2026년 6월 19일(금) ~ 2026년 11월 14일(화)
- ◆ 교육장소 - 경남숲교육협회 은행나무실(윙스타워 A동 1806호)  
- 경상남도수목원 등
- ◆ 교육시간 매주 화, 금(19:00~22:00, 23:00), 토(09:00~17:00, 18:00)  
\* 총 238시간(강의 208시간 + 교육실습 30시간)  
\* 이론과목은 비대면(Zoom)을 병행함
- ◆ 교육주관 사단법인 경남숲교육협회

### 모집안내

- ◆ 모집기간 2026년 4월 21일(화) 오전10:00 ~ 선착순 마감
- ◆ 모집대상 유아숲지도사를 희망하는 자(경력, 학력, 나이 제한없음)
- ◆ 모집인원 40명(※최소모집인원 20명 미달 시 운영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)
- ◆ 교육비용 1,800,000원 (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1,600,000원)

### 신청방법

- ◆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후 교육비 입금 (입금확인 후 접수 완료/선착순)
- ◆ 신청서 (사)경남숲교육협회 홈페이지 <https://gnsup.kr> 공지문 다운로드 참조

### 접수처

- ◆ 접수 : <https://gnsup.kr> 홈페이지 접수
- ◆ 관련문의 : 055-755-8988 (사단법인 경남숲교육협회 사무국)

※ 사정에 따라 강의 시간 및 교육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(산림청 운영지침 준수)

사단법인 경남숲교육협회

## ◎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교육내용

구 분		교 육 과 목	시 간		구 분	교 육 과 목	시 간		
			이론	실습			이론	실습	
공통 과정	산림교육론 (12시간 이상)	*산림교육의 이해	3		유아숲 생태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(63시간 이상)	유아숲생태교육 개론	6	4	
		*나무·숲·임업	3			유아숲체험원 운영·관리	2	3	
		*숲해설개론	3			숲유치원 운영 사례	3		
		*산림휴양·문화	3			숲교실 만들기	3		
	산림생태계 (21시간 이상)	*산림생태학	3			유아숲 생활지도	4	2	
		*식물의 이해	10	12		유아숲지도사론	4	2	
	기본소양 (3시간이상)	*리더십과 인성	3			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	4	6	
교육 과정	산림 생태계 (21시간 이상)	야생동물의 이해	4	6	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	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	5	21	
		곤충의 이해	2	4		교양과목	숲밧줄놀이		6
		양서류의 이해	3				숲생태놀이	2	4
		산림토양학	2	3	기후변화와 환경의 이해		3		
		산림탄소중립	1		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(20시간 이상)		응급처치	4	8
	커뮤니 케이션 (13시간 이상)	커뮤니케이션기법	3	3			야외활동 지도	2	2
		멀티미디어활용법	3	4		아동안전관리	4		
	유아교육 (22시간 이상)	유아교육개론	6		교육실습(30시간 이상)		30		
		유아발달론	8		오리엔테이션 및 특강				
		숲유치원과 특수아동지도	6	2		4			
	* 이론 및 시연평가 및 수료식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, 추후 별도 안내								
	이수시간		이론강의	실습강의		교육실습	총시간		
			117	91		30	238		

▷ 교육 시간 : 총 238시간 (강의 208시간 + 실습 30시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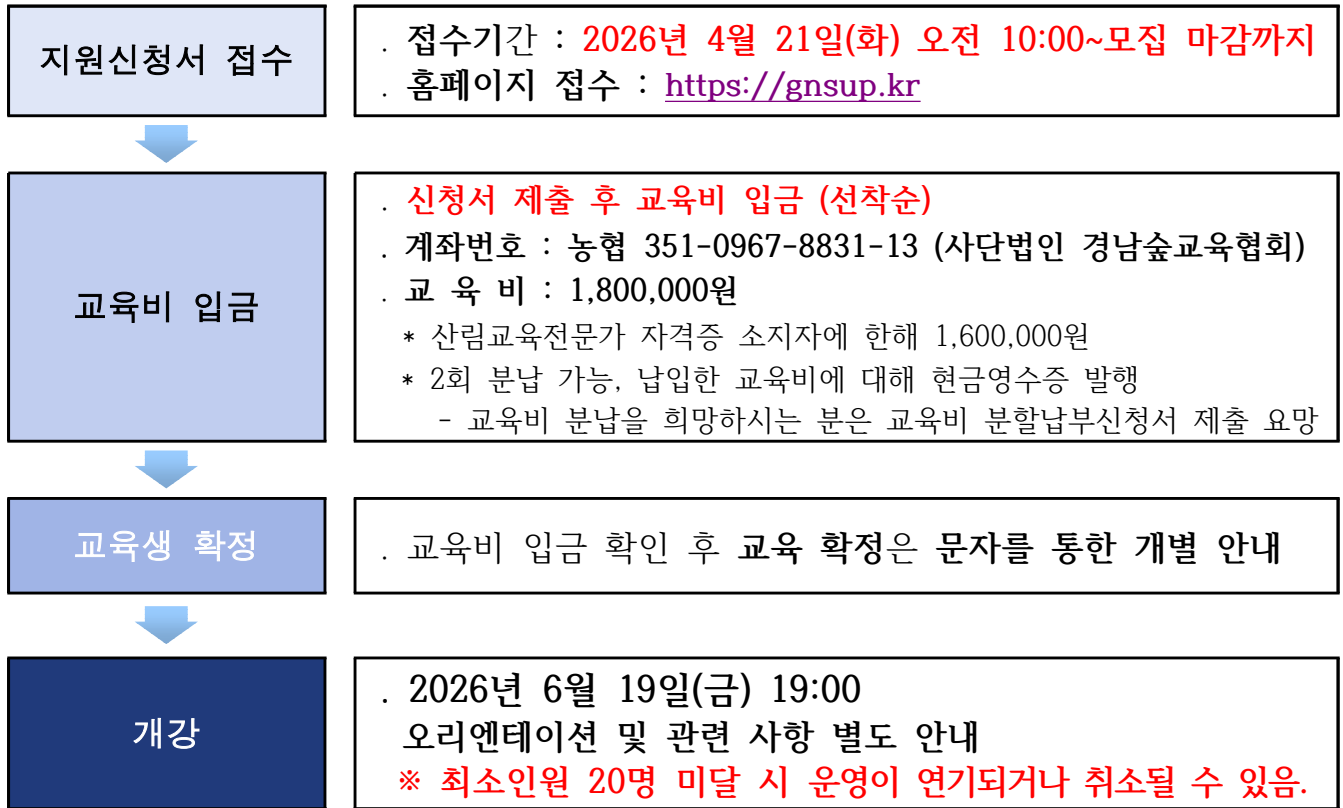
▷ 교육 시간 60% 이상 출석 경과 시점부터 교육실습 실시 가능

▷ 법적 이수 시간인 205시간(교육실습 30시간 포함) 이수 후 이론평가(70점), 시연평가(70점 이상)를 통과하신 분에 한하여 산림교육전문가(유아숲지도사) 자격증이 발급됨.

▷ **공통과정 36시간 필수 이수( \* 공통과정 결석 시 수료 되지 않음)**

\* 단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공통과정 면제되며, 해당 과목은 수강이 불가함.

## ◎ 전형 방법 및 절차



## ◎ 교육비 반환 규정

반환 사유	기준	비고
4) 교육생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- 교습 개시 전  - 교습 개시 후 · 교습 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 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이후  · 교습 기간이 1월 초과	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○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 ○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 ○ 미환급  ○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.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	일할(日割)계산 하여 사유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.  *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.
수강 기간 도중 양성기관 지정취소, 일정 기간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양성기관의 이전, 폐강, 기타 양성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	잔여기간에 대한 교육비 환급	

\* 이외 [[한불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학원 운영업,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참고]

## ◎ 모집 자격 제한

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)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. [개정 2014.3.18.]

